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3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7일

발 의 자 : 김창원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미경, 김기대, 유동균,
박호근, 이복근, 이병해,
박마루, 유 청, 김혜련,
오승록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천만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공원시설의 하나인 동물놀이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,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간의 마찰을 줄이고 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 제5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”을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「<u>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(이하 “<u>규칙</u>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